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20. 2. 27.>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·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즉시

① 부동산 소재지			
② 신고인	구분	[] 매도인 [] 매수인 [] 개업공인중개사 [] 대리인	
	성명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(법인소재지)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

③ 변경 항목	변경 전		변경 후	
④[]거래지분 비율	분의 ()		분의 ()	
[]거래 지분	[] 토지 [] 건축물	분의	[] 토지 [] 건축물	분의
[]계약대상 면적	토지: ㎡ 건축물: ㎡		토지: ㎡ 건축물: ㎡	
[]계약 조건 또는 기한				
[]거래가격	거래가격		거래가격	
	분양가격		분양가격	
	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		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	
	추가 지불액 등		추가 지불액 등	
[]중도금 및 지급일	중도금: 지급일:		중도금: 지급일:	
[]잔금 및 지급일	잔금: 지급일:		잔금: 지급일:	
⑤[]매수인 변경				
⑥[]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		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② 신고인
매도인 : (서명 또는 인)
매수인 : (서명 또는 인)
개업공인중개사 : (서명 또는 인)
(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	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사본(부동산등의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	

유의사항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제9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작성방법

① 부동산 소재지는 동·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습니다.

② 매도인,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, 신고인란에는 거래당사자 간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,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.

③ 변경하려는 각 항목 앞의 []에 ∨표시를 하고, 변경 전·후의 내용을 적습니다.

④ 거래지분 비율란의 괄호 안에는 거래 지분이 변경되는 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.

⑤ 매수인 변경란에는 공동매수의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매수인의 성명과 계약을 이행하는 다른 매수인의 거래 지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, 매수인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
⑥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변경란에는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등을 한 계약대상 부동산 등의 지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되, 계약대상 부동산 등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
※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수이거나 변경 항목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고인		처리기관(담당부서) 시·군·구(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)
신고서 작성·제출	→	접수
		↓
		신고 내용 확인
		↓
		검토 및 결재
		↓
변경된 신고필증 발급	←	변경된 신고필증 작성